

제3장

성명권 침해 사례

사례 41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관련 기사에 농협캐피탈 직원인 신청인의 광고 전단지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 2012대구조정8 손배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주식회사 경북일보

중 재 부 : 대구중재부

접 수 일 : 2012. 04. 05.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한 불법사기대출의 심각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농협캐피탈 직원인 신청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적시된 광고 전단지를 게재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본인은 여신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NH농협캐피탈 상담사로서 불법대출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광고전단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십만 원을 주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경북일보 : 『'농협캐피탈' 사칭 사기대출 극성』 제하의 기사 (2012년 3월 22일자 4면)

내 용 : 이 모(33·영양읍) 씨는 21일 신문, 잡지에 난 NH농협캐피탈 전단지를 보고 대출상담을 받으려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전화 목소리가 농협캐피탈 직원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뒤 금리가 맞지 않으면 다른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기관과 연계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 이상한 생각이 든 이씨는 가까운 농협에 확인해보니 NH농협 상표를 사칭한 사기대출이었다.

이씨는 “전단지만 보면 누구라도 NH농협캐피탈 전단지로 오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경북 북부 일대 NH농협 상표와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대출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주로 노인과 서민층을 노리고 광고문구가 전송돼 피해확산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작 이에 적극 대처하고 실상을 알려야 할 농협중앙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듯 판전이다.

21일 경북 북부 주민들에 따르면 주로 휴대전화, 팩스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전단지 형태로 일반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 사무실과 가게 등에 전송되는 사기대출 광고가 주로 NH농협 상표와 NH농협캐피탈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

문자와 팩스내용은 NH농협캐피탈이라고 소개한 뒤 수신자가 현혹될 만한 대출금리를 제시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 특히 의혹을 갖고 전화를 걸거나 걸려온 전화에 응대하면 농협이 신경분리를 통해 농협캐피탈로 출범했다고 속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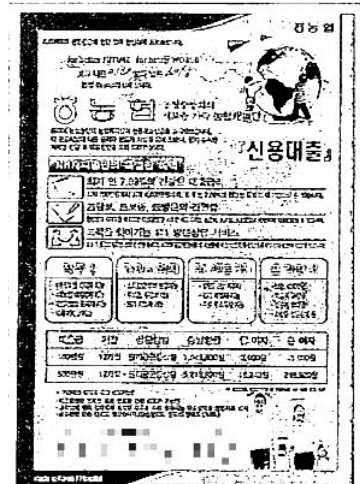
여기다 대출금리가 맞지 않으면 다른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기관에 연계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마저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광고 여부 확인을 위해 NH농협캐피탈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ARS자동응답기는 신규고객과 기존고객만 응대가능하고 사기성 여부 또한 확인할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이처럼 NH농협을 사칭한 사기대출 광고가 극성을 부리지만 NH농협은 캐피탈은 ‘팩스나 문자 등을 이용한 대출은 하지 않고 NH농협을 사칭한 사기대출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대처해 비난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H농협 경북본부 여신담당 권○○ 차장은 “NH농협이나 캐피탈은 070 전화번호로 발송되는 전화 문자나 팩스, 전단지영업은 하지 않는다”며 “NH농협은행만이 아닌 농협 로고에 쉽게 현혹돼 아직까지 농협본부나 지역농협은 별다른 대책이 없고 중앙회나 캐피탈에서 사기대출 예방안내공지를 강화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농협을 믿고 사는 농촌 어르신이나 서민들에게 피해우려가 있는데도 자기 일이 아니라는 식의 책임회피는 1천만 농협고객을 무시한 처사”라며 “보이스피싱처럼 대대적인 안내홍보와 사법기관과 연계한 추적단속으로 단 1명의 피해자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NH농협을 사칭한 사기대출이 전단지까지 만들어 배포되고 있지만, 정작 NH농협은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이 지체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2. 04. 20.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50만 원 지급



사례 42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로 검찰이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인 신청인들의 실명을 언급했다.

사 건 : 2012서울조정1656, 2012서울조정1657(병합)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 고 ○ ○ 외 3인

피신청인 : 1.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2. 주식회사 동아닷컴

중 재 부 :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 2012. 11. 22.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로 4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보도하면서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신청인 4인의 실명을 언급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피의자인 신청인들의 신분을 공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피신청들이 연대하여 각 신청인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각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 당사자 모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자동소제기 간주되었다.

조정대상보도

①

동아일보 : 『**통진당 부정선거 45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14면)

내 용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는 13일 4·11총선 전 치러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당시 대리투표 혐의(업무방해)로 45명의 당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는 구당권파 이석기 의원을 위한 대리투표 혐의자가 24명으로 가장 많다.

이 중엔 고○○, 김○○, 최○○, 강○○ 씨 등 인터넷언론 ‘○○의 ○○’의 현직 기자 4명도 포함돼 있다. ‘○○의 ○○’는 구당권파의 기관지로 알려져 있다. 고 씨는 통진당 국고 횡령 사건 연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4명은 모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되기도 했다.

또 이 의원이 운영해 왔던 ○○○전략그룹(현 ○○커뮤니케이션즈)의 자회사인 ‘○○투어’와 ‘주식회사 문화기획 ○○’의 직원들도 포함돼 있다. 구당권파 조○○, 황○ 후보를 위한 대리투표 혐의로도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통진당 청년비례대표 후보였던 유○○ 씨는 5촌 당숙과 숙모, 외사촌형과 그 부인 등 친인척 4명의 선거권을 넘겨받아 이 의원을 위해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구당권파 김재연 의원의 비서다.

비당권파 나○○ 후보를 위한 대리투표 혐의로는 1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태 후보와 강기갑계로 알려진 윤○○ 후보를 위해서도 1건씩 대리투표가 있었고 관련자 3명 모두 기소됐다.

②

동아닷컴 : 『**통진당 부정선거 45명 기소**』 제하의 기사 (2012년 11월 14일자)

내 용 : <조정대상보도 ①의 보도내용 참조>

조정신청취지

- 피신청인1.은 해당 기사의 같은 면, 같은 위치에 같은 크기로 아래의 사과문을 게재한다.
- 피신청인2.는 메인 초기화면에 팝업창으로 아래의 사과문을 게재하고, 기사를 삭제해 포털사이트 및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과문>

1. **제 목** : [사과문] ○○의○○ 기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2. **내 용** : 동아일보는 지난 11월 14일 A14면 ‘통진당 부정선거 45명 기소’ 제하의 2단 기사에서 ○○의 ○○ 기자 4명의 실명을 거론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개인의 실명은 인권과 직결된 것으로 공공의 알권리를 위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하는 것이 언론보도의 기본 수칙이자 윤리강령입니다. 이에 반해 해당보도의 실명 거론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의○○ 기자의 실명을 직접 거명하여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피신청인 1과 2는 연대하여 명예훼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마다 1인당 금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0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 피신청인 이의신청

